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62

발의연월일: 2020. 10. 19.

발 의 자: 송갑석 · 서삼석 · 전용기

안호영 · 오영환 · 이동주

신정훈 · 김경만 · 윤영덕

조오섭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EU에서 그린딜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화 그리고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의 본격 추진,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추진 등을 계기로 산업 부문의 저탄소, 친환경화를 가속화할 필요성이 있음.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 전환을 위해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조공정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산물을 기업이 자가재이용하고, 부산물과 폐에너지 등을 기업 간, 또는 기업과 지역사회 간교환해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

음.

아울러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제조 산업의 육성이 필요함. 이에 재제조 품목제도를 폐지하여 다양한 품목의 재제조제품의 시장출시를 촉진하고, 이와 동시에 재제조 제품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 소비자 보호조치를 통해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의 목표 명확화를 위해 법의 목적에 저탄소·친환경을 명시함(안 제1조).
- 나.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 다.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라.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하여 다양한 재제조 품목의 출시촉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3조 삭제).
- 마.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부산물을 기업과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0 조의2 신설).

- 바.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주요 금속자원의 재자원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3 신설).
- 사.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을 사업장 내부에서 재자원화하는 자가재이용 촉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4신설).
- 아. 재제조 품목의 시장출시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재제조 제품의 표시 및 보상방법 고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오염을 줄이는"을 "저탄소·친환경"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3. "재제조(再製造)"란 제1호의2의 재생자원 또는 사용 후 제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 3의2. "재제조 제품"이란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를 금지한 품목에 해 당되지 아니한 제품 중 재제조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3의3. "재제조 인증제품"이란 제3호의 재제조를 통하여 생산된 제품 중 재제조 품질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성능 등이 우수하여 제22조제1 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제품을 말한다.

- 6의2. "생태산업개발"이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과 폐기물을 기업 또는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 11. "청정생산사업장"이란 제조공정에서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설비를 활용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현격히 저감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12. "순환경제"란 원료조달, 설계, 생산, 유통, 사용, 재자원화 등 제품의 전과정 단계에서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를 말한다.
- 13. "자가재이용"이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을 자체 사업장 내부에서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 14. "금속자원 재자원화"란 제1호의2의 재생자원으로부터 금속자원을 회수하여 산업의 원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친환경 산업활동,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산 업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 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로의 전환 촉진방안

6의3.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제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 유관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 3호부터 제5호"를 "제1항제3호부터 제6호"로 한다.

1.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의 일반회계

제6조제1항제5호 중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을 위한"을 "생태산업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산업의 육성을 위한"을 "산업, 자가재이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제품

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을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으로한다.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술 제6조의2의 제목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을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경영을"을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거나 녹색경영을"로,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을 ""청정컨설팅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을 "청정컨설팅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의3 중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을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국내외 환경규제 이행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지원 제8조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① 정부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청정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청정생산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 1. 생산공정의 개선
- 2. 사업장 발생 부산물 폐에너지 등의 재이용
- 3. 친환경 제품 생산
- 4. 친환경 원료로 대체
- 5. 작업조건의 개선
- ③ 정부는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에 관한 진단
- 2.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의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대한 지원
- 4. 청정생산 수준의 진단과 환경설비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문 기업의 육성
- 5. 청정생산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 6. 그 밖에 청정생산사업장 확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청 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

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을 "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련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의 국제협력"을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인력·정보"를 "인력·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인력·정보"를 "인력·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시회·세미나"를 "전시회·세미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설비산업과 청정생산기술"을 "환경설비산업, 청정생산기술 및 생태산업개발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사업자등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으로, "경우에는 그에"를 "기관·단체·사업자등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으로, "경우에는 그에"를 "기관·단체·사업자등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으로, "경우에는 그에"를 "기관·단체·사업자 등에게"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사업자 등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으로, "경우에는 그에"를 "기관·단체·사업자 등에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자원순환형 산업구조의 구축"을 "산업부문의 순환경제촉진"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산업부문

의 순환경제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을 각각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생태산업단지"를 "생태산업개 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을 "산업 부문의 순환경제를"로 한다.

4의2. 금속자원 재자원화 활용 촉진을 위한 전·후방 산업의 지원 4의3.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품 설계 및 공정 개선 지원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2.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3. 생태산업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 4.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지원
- 5.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생산제품의 품질인증 획득지원
- 6.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

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금속자원 재자원화 관련 산업 육성
 - 2. 금속자원 재자원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3. 재생금속의 안정적인 수급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 관련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4(부산물 등의 자가재이용 촉진) ① 정부는 제품 생산과정에 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이 당해 사업장 안에서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이용되도록 촉진하여야 하며,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산물 등의 자가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 및 시설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고, 해당 방법 및 시

설의 인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된 방법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부산물 등의 자가재이용을 한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간 주한다

제21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의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해"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으로, "지정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업 간"을 "기업 및 지역사회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0조의2제 1항의 사업을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우선적 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이 해제된 경우
- 3.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⑧ 제1항과 제7항에 따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품질인증의 기준·절차"를 "품질인증의 대상·기준·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위탁 업무를 처리한 경우
-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⑨ 제8항에 따른 취소 등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22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 4.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사람들에게 중 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 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2조의3(품질인증대상제품의 설계 등) 제22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은 재 활용·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의 구조

와 재질 등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재제조 제품의 표시 등)"을 "(인증제품의 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를 "품질인증을 받은"으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를 "인증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제조 사업자"를 "사업자"로,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을 "표시 또는 이와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구매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한다.
- ④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표시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생태산업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 3. 제21조제7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 4.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 6. 제2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 취소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 2.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또는 홍보한 자
- 제31조 중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을 "제2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제조 표시를 하지 않은 자
 - 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증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

하지 않은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
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제1조(목적) -----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 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친환경-----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 3. "재제조(再製造)"란 제1호의2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의 재생자원 또는 사용 후 제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활 품을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 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 ·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 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 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 | 활동을 말한다. 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 ·세척·검사·보수·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 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 한다. <신 설> 3의2. "재제조 제품"이란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를 금지한 품

4. • 5. (생략)

5의2. "환경경영"이란 기업·공 공기관·단체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 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 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6. (생 략) <신 설> 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제품 중 재제조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3의3. "재제조 인증제품"이란 제3호의 재제조를 통하여 생산된 제품 중 재제조 품질인 증기준을 만족하고 성능 등이 우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제품을 말한다.

4.·5. (현행과 같음) <<u>삭</u> 제>

6. (현행과 같음)

6의2. "생태산업개발"이란 제품 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 산물 등과 폐기물을 기업 또 는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 7. (생 략)

7의2. "환경경영체제"란 기업등 | <삭 제> 이 환경경영을 도입하여 실행 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 축한 체제를 말한다.

8. · 8의2. 삭 제

9. "국제기준"이란 국제표준화 기구가 환경경영체제에 관하 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한다.

10.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말 한다.

7. (현행과 같음)

<u><삭</u> 제>

10. (현행과 같음)

11. "청정생산사업장"이란 제조 공정에서 청정생산기술 및 환 경설비를 활용해 환경오염물 질의 배출을 현격히 저감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2. "순환경제"란 원료조달, 설 계, 생산, 유통, 사용, 재자원화 등 제품의 전과정 단계에서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 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 는 친환경 경제를 말한다.

13. "자가재이용"이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

<신 설>

제3조(종합시책) ① (생 략)

-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6. (생략)

<신 설>

물 등의 잔재물을 자체 사업 장 내부에서 원료 또는 에너 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말 한다.

14. "금속자원 재자원화"란 제1 호의2의 재생자원으로부터 금 속자원을 회수하여 산업의 원 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친환경 산업활동,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환 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② 사업자는 환경친화적인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 구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시책)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 ~ 6. (현행과 같음)
 6의2.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로의

7. (생략)

③ ~ ⑤ (생 략)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 조사) ① (생 략)

<신 설>

② (생략)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① 정부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① ----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 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 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

전환 촉진방안

6의3.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 의 전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 력과 관련된 사항

- 7.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 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 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 또는 협회 등 유관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회계 또는 자금 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1. ~ 5. (생략)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제1</u> 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회계나 자금을 관장하 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
 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5.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을 위한 관련 기술
 - 6. (생략)
 - 7. 재제조 <u>산업의 육성을 위한</u> 관련 기술

<u>.</u>
1.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
의 일반회계
$\underline{2}$. \sim $\underline{6}$. (현행 제 1 호부터 제 5 호
까지와 같음)
②제1항
<u>제3호부터 제6호</u>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①
1. ~ 4. (현행과 같음)
5. <u>생태산업개발</u>
6. (현행과 같음)
0. (원왕각 독립) 7 <u>산업, 자가재이용, 금속</u>
자원 재자원화 등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u>હરા 0 ભા</u>

- 8.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계 이용과 관련된 기술
 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 ② (생략)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녹색</u> 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 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 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제6조의2(녹색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① 정부는 기업등이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 무(役務)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녹색경영컨설팅사 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 2. (생략)
 - 3. 그 밖에 <u>녹색경영컨설팅사업</u> 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u> </u>
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u>기술</u>
② (현행과 같음)
③ <u>기술개</u>
발사업과 관련된 산업
<u>.</u>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u>=</u>) ①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
용하거나 녹색경영을
<u>"청정컨설팅사업"</u>
<u>.</u>
1.・2. (현행과 같음)
3 <u>청정컨설팅사업</u>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생산기술 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제1항제3호의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은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으로 본다.

③ <u>제1항과 제2항</u>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① (생략)

-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1. ~ 4의2. (생략)
- 4의3.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 른 <u>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u>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삭	제>
\ 4	~1] <i>/</i>

	③ <u>제1항</u>
	<u>.</u>
제	7조(청정생산지원센터) ① (현
	행과 같음)
	②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 5. (생략)
- ③ ④ (생 략)
- 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 산) ① (생 략)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기업에 대하여 청정생산기술의활용에관한생산공정 진단·지도사업과 청정생산기술의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할수 있다.이경우그기관에 필요한자금을출연하거나그밖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신 설>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지
원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
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u>촉진) ① 정부는 제조공정에서</u>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
로 줄이는 청정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
과 확산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

4의4. 국내외 환경규제 이행과

- 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청정 생산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 1. 생산공정의 개선
- 2. 사업장 발생 부산물·페에너 지 등의 재이용
- 3. 친환경 제품 생산
- 4. 친환경 원료로 대체
- 5. 작업조건의 개선
- ③ 정부는 청정생산사업장의 확 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 에 관한 진단
- 2.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의 관한 법률」 제30 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대한 지원
- 4. 청정생산 수준의 진단과 환

 경설비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

 한 전문기업의 육성
- 5. 청정생산사업장에 대한 정보

를 종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의 구축 · 운영

- 6. 그 밖에 청정생산사업장 확 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
- ④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 게 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 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 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정부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삭 는 우리나라의 정부 · 기업 · 대 학 · 연구소, 그 밖의 기관 · 단 체 등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단체 등과의 환경설 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제1</u> <u>항에 따른</u>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
 술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연구
-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
 술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
 교류
- 3.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 술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또는 국제청정생산기술 시장의 운영
- 4. 환경설비산업과 청정생산기 술의 해외시장 개척
- 5. (생략)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 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 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

②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런된
·.
1. <u>국제협력</u>
2. <u>인력·정보</u>
3. <u>전시회·세미나</u>
4. 환경설비산업, 청정생산기술
및 생태산업개발 사업
5.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을 하는 <u>경우에는 그에</u>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 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 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 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u>자원순환형 산업구조의</u> 구축

- 제20조(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u>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u> 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자원</u> <u>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u>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생태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재제조 산업과 제품서비스화

<u>기관·단체·사업자</u>
<u>등에게</u>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기관·단체·사업자 등</u>
<u>에 게</u>
 .
제4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
제20조 <u>(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u> <u>진)</u> ①
·
<u>진)</u> ①
<u>진)</u> ①
<u>진)</u> ①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u>진)</u> ①
진) ①
진) ①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②산업부 문의 순환경제를
진) ①
진) ①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②산업부 문의 순환경제를

산업의 육성

<신 설>

- 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 를-----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사업
- ③ (생략)
- <신 설>

- 4의2. 금속자원 재자원화 활용 촉진을 위한 전·후방 산업의 지원
- 4의3.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 한 제품 설계 및 공정 개선 지 원
- 5. 그 밖에 자원순환형 산업구 5.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 ③ (현행과 같음)
-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 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2.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 3. 생태산업개발에 관련된 전문 가 양성 및 교육

- 4.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지역사 회와의 협력지원
- 5.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생산제품의 품질인증 획득지원
- 6.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담기 관으로 지정하여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경우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금속자원 재자원화 관련 산 업 육성
- 2. 금속자원 재자원화 기술의개발 및 보급
- 3. 재생금속의 안정적인 수급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적으로 중 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 관련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0조의4(부산물 등의 자가재이용 촉진) ① 정부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이당해 사업장 안에서 원료 또는에너지로 재이용되도록 촉진하여야하며, 재이용 촉진을 위해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산물 등의 자가재이용을 촉진하기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 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 라 한다)와 협의하여 생태산업 단지를 지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 | <삭 제>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방법 및 시설을 환경부장 관과 협의하여 고시하고. 해당 방법 및 시설의 인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된 방법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부산물 등의 자 가재이용을 한 경우에는 「폐기 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단지에서의 생태산업개발 촉진 을 위해----「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 | 제7조의4제1

----<u>지정할</u>수 있다.

할 수 있다.

- 1. 생태산업단지 내의 기업간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 2. 생태산업단지 내의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3.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 4.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 5.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 구축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을 지 정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등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 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 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

<삭 제>

(4)

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 시설계획 등이 입주 기업간 자 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삭 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기업	및 지
역사회 간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 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0조 의2제1항의 사업을 제1항에 따 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에 대하 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을 받은 경우

<u><신</u>_설>

-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 의 품질인증 등) ①・② (생 략)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품질 · 성능평가와 공 장심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 <삭 제> 항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단체 에 품질 · 성능평가 및 공장심사 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라 산업단 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 3.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 지정 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⑧ 제1항과 제7항에 따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한다.
- 의 품질인증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삭 제>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 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u>품질인증의 대상·기준·</u>
<u>절차</u>
<u><</u> 삭 제>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에서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 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신 설>

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업무를 처리한 경우
-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경우
- ⑨ 제8항에 따른 취소 등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제23조(재제조의 대상 등) ① 재 제조 대상 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 는 제품 또는 부품 중에서 산업 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22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 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 4.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 제22조의3(품질인증대상제품의 설계 등) 제22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인증 대상에 해당하 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은 재활용・재제조 등을 통 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 록 제품의 구조와 재질 등을 설 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삭 제>

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 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대상제품별 재제조 공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 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 방법, 그 밖에 품질보증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재제조 대상 제품을 설계하 거나 생산하는 기업등은 제품의 사용 이후 재제조 등을 통한 자 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 품이나 부품의 구조와 재질 등 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 다.

제23조의2(재제조 제품의 표시 등) ① 제22조에 따라 <u>재제조</u>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재제조 <u>제품에 표시하여야</u>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제23소의2 <u>(인승제품</u>	-의 글	<u> </u>	<u> 등)</u>
①		품	<u> 일인</u>
<u> 증을 받은</u>			
<u>인</u> 증제품에	표시	할 수	힜
<u>다</u> .			
①			

받은 재제조 사업자가 아닌 자 ---<u>사업자</u>-----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 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 정취소 등) ①・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삭 제> 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려 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표시 또는 이 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를-----

③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 업자는 구매자가 재제조 제품임 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 업자는 제3항에 따라 표시한 재 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 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 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정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 음)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

<신 설>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청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 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 기관의 지정 취소
-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생태 산업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취 소
- 3. 제21조제7항에 따른 생태산 업단지의 지정 취소
- 4.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 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 6. 제2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 센터 등의 지정 취소

제29조(벌칙) 제23조의2제2항을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 제)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 는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 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 2.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 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또는 홍보한 자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 제) 제22조제7항에 따른----

제3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제조 표시를 하지 않은 자 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증기간 등을 구매자에

게 고지하지 않은 자